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I. 보육교사 2급

-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2016.8.1. 시행) 제12조제1항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주요 변경사항

①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변경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
① 보육기초(6과목) ② 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 ③ 영유아교육(6과목 이상) ④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과목 이상) ⑥ 보육실습	① 교사인성(2과목) ② 보육지식과 기술 (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③ 보육실무(2과목)

②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③ 보육실습 기준 강화

4주 160시간 실습	6주 24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①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함

②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영역	교과목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③ 보육실습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세부 기준]

• **보육실습 기간**

- 보육현장실습을 2016.12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현행기준(4주, 160시간)에 따라 실습 실시 가능.
- 보육현장실습을 2017.1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개정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실습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간을 나누는 방식은 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서 협의하여 진행.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해야 함.

• **보육실습 기관**

- 2017.1.1. 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4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 교과목의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사례]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7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에 따라 교과목 이수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6.12월에 시작하는 동계 계절학기에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 미적용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사례]

- 2018.2월에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2월까지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이수 완료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18.2월에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3월 이후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교과목을 이수 완료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에 따라 교과목 이수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5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1)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대상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보육실습
- (인정기준) 기존의 인정기준을 유지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법 개정 시 변경된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대상교과목) 아동복지(론),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적용대상) 2017.1.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인정기준) 종전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대상자이나, 대학의 교육과정 변경으로 종전 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불가능한 경우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 시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인정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2016년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아동문학” 대신 “아동문학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대신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2) “분리(영아발달, 유아발달) → 통합(영유아발달)”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 2017.1.1. 전 대학 입학생은 보육필수 영역에서 “영아발달”, “유아발달” 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해당 영역의 교과목 이수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 (대상교과목) 영아발달, 유아발달
- (적용대상) 2014.1.~2016.12. 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인정기준)

①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아발달”과 “영유아발달” 또는 “유아발달”과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하여 ‘보육필수’ 영역의 학점 이수기준(6과목 18학점) 충족 시 인정

[사례]

2015년도 대학에 입학하여 “영아발달(3)”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7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유아발달(3)”, “영유아발달(3)” 이수 시 인정

②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하고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 하거나,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하고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 시 인정

[사례]

2016년 대학 입학자가 보육필수 영역에서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보육교사론(3)” 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 2018년에 복학하여 “영유아발달(3)”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보육필수 영역에서 1과목 3학점이 부족한 경우

→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아동상담(론)(3)”을 이수하여 해당 영역 기준인 1과목 3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아동생활지도(3)”을 추가로 이수하여, 보육필수 영역에서 이수한 5과목 15학점과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추가로 이수한 “아동생활지도(3)”를 합산 시 총 6과목 18학점을 이수하였으므로 인정

※ 상기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이외의 교과목에 대해서 법령 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공문, 해당 교과목의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II. 보육교사 3급

-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2016.8.1. 시행)
제12조제2항 [별표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주요 변경사항

①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변경

보육기초 등 6개 영역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
① 보육기초(3과목) ② 발달 및 지도(7과목) ③ 영유아교육(7과목) ④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5과목) ⑥ 보육실습	① 교사인성(2과목) ② 보육지식과 기술(18과목) ③ 보육실무(2과목)
총 25과목(65학점) 이상	총 22과목(65학점) 이상

② 보육실습 기준 강화

4주 160시간 실습	6주 240시간 실습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정원 15인 이상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①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18과목(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7학점)
22과목(65학점) 이상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으로, 보육실습 기준은 보육교사 2급과 같음.

② 보육실습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 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2016.8.1. 이후 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한 경우 변경된 보육실습 기준 준수

③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